

문서관리번호	신설 (제 1 판)
최종 수정일	2021. 7. 23
문서 관리자	정책지원 1 팀

현대건설 경쟁법 준수 규정

Competition Compliance Policy

2021. 7.

[담당자] (Managed by)

정책지원팀

(Policy Support Team1)

조 중 현

Cho, JoongHyun



[승인자] (Approved by)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이 한 우

Lee, HanWoo



Competition Compliance Policy
for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the "Company")
현대건설 경쟁법 준수 규정

1. **FORWARD** 서문

1.1 All of us at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the "Company") have an obligation to do business honestly, ethically and lawfully. It is our policy to comply with the law wherever we operate.

현대건설 (이하 "회사")의 임직원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규정은 현대건설이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 Competition laws across the world differ, but generally speaking, competition law prohibits 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which prevents, restricts or distorts competition. This may be by fixing prices, sharing markets, rigging bids or limiting production or supply. It also prohibits any abuse of market power, such as predatory pricing designed to drive out competitors or unreasonable "tie-ins." It has relevance to all aspects of HDEC's operations. We are committed to not act in any way that may restrain trade or reduce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각 국가의 경쟁법 (공정거래법)의 내용이 각기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점에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입찰 시 서로 담합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자를 부당하게 축출할 목적에서 약탈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조건을 결부시키는 행위 (tie-in)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현대건설이 영위하는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배척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3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can have extremel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Company, and potentially for the employees involved. There may be substantial actions due to private actions and harm to our corporate reputation. Every employee has a duty to comply with the competition rules. No one at the Company has the authority to give any order or direction that would result in a violation of this policy.

경쟁법 위반 행위는 회사는 물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적극 연루된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회사의 손해는 경제적 면에 그치지 않고 평판과 같은 무형의 피해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은 본 규정과 경쟁법의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그 어떤 임원이나 지배주주도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1.4 The Company has already established (i) Antitrust Policy, (ii)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CP), and (iii)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CP) Manual. These "Competition Compliance Policy", which will be applied across all operations of HDEC, are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on:

회사는 경쟁법 준수를 위하여 (1) 반독점 규정 (2015년 제정 및 시행),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같은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임직원들의 실무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은 물론 그 외 국가와 지역에서 현대건설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i) what the competition rules mean for us, (경쟁법이란 무엇인가)
- (ii) why it is essential that we comply with them; and (왜 경쟁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 (iii) how to comply with competition rules in practice. (어떻게 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는가)

1.5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are available to help you. Please ensure that you seek advice whenever you feel that a certain course of action may have competition law implications. If you become aware that a particular practice is taking place which may infringe the competition rules, it must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Company. Please refer paragraph 4.1 and 4.2 for having consultation and/or reporting on this issue.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실 준법지원팀에 연락하여 본 규정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업무 진행 과정에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적절한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경쟁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자문 및 신고 창구는 본 규정 4.1 조 및 4.2 조 기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WHAT ARE THE COMPETITION RULES? 경쟁법이란 무엇인가**

2.1 Competitive markets provide strong incentives for good performance - encouraging firms to improve productivity,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reduce prices and to innovate; whilst rewarding clients and customers with lower prices, higher quality, and wider choice.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 더 높은 품질, 더 많은 선택가능함을 제공하여 최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들은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2.2 The competition laws aim to promote competitive markets by prohibiting certain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distort the competitive process. They prohibit agreements between competitors which have the object or effect of distorting the competitive process. "Object" infringements are established without the need to prove any anti-competitive effects and include the most serious types of prohibited conduct between competitors (see section 0 below). Agreements may result from informal verbal arrangements (e.g. a gentlemen's agreement) as well as from more formal written agreements. The exchange or unilateral disclosure of confidential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between competitors can also give rise to a prohibited concerted practice.

경쟁법은 각 시장참여자들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여러 반경쟁적 행위 (담합 등)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이 완전경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각 시장참여자들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쟁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모종의 합의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목적"은 아래 2.6 항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데, 이 때 그 고의성과 경쟁제한성 요건은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경쟁적 합의는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각 시장 참여자들 간 일방적인 사업상 민감한 대외비 정보의 제공행위만으로도 경쟁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between competitors*

시장 참여자 간 묵시적 합의 또는 협정의 존재

2.3 The law does not prevent us from gathering market intelligence about our competitors in order to be able to compete effectively. For example, you are permitted to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sales and prices from publicly available sources and you are also permitted to

participate in a benchmarking scheme or survey collected by independent third parties, which collates and then redistributes anonymous, aggregated and historic industry-wide sales information to participants. Please see below for more detailed guidance.

경쟁법은 각 시장참여자가 시장에서 자신들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여러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쟁 기업의 판매가격 정보를 취합하거나, 경쟁 기업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하거나, 독립된 외부의 제 3 자를 통해 시장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홍보자료로 재활용하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속한 산업 전반의 과거 기록을 취합하는 행위가 그러합니다.

- 2.4 Competition law prohibits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between two or more businesses that prevent, restrict or distort competition and may affect trade. The effect on trade and competition can be actual or potential. Agreements can be written or oral. This is an important point - a conversation over the phone may be an "agreement". It does not have to be in writing or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s can also be informal arrangements such as a "gentlemen's agreement", an "understanding", suggested in e-mail traffic, or could be an understanding arising from the exchange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경쟁법은 둘 이상의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성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만한 묵시적 합의 또는 협정의 체결을 금지합니다. 거래와 경쟁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반드시 현실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쟁제한적 협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형태의 계약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화, 이메일을 활용한 연락 또는 대외비에 속하는 민감한 사업정보의 일방적 제공행위만으로도 반경쟁적 협정 사실이 추정되어 경쟁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re able to infer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relatively limited evidence.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considerable powers to enable them to investigate breaches of competition law, including carrying out "dawn raids" on a company's premises as well as individuals' homes and cars, and the searches they undertake are likely to be intrusive, including an in-depth search for any evidence stored on IT systems.

각국의 경쟁당국 (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은 실무상 반경쟁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묵시적 합의 (understanding) 또는 협정의 존재를 극히 제한적인 정보와 증거 속에서 추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습적인 압수수색 (dawn-raids)을 통해 관계된 임직원들의 집, 차, 회사 컴퓨터 등을 압수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2.6 Examples of the most serious prohibited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with competitors include:

경쟁법상 금지되는 대표적인 반경쟁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Price fixing: (가격 담합: 가격의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price fixing arrangements, including discuss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prices, such as minimum and/or maximum prices, cover bid (i.e., a price which would look realistic but not put forward to win the work), fixing part of a price, profit margins (where parties agree to base prices on a set profit margin), consultation (e.g., where one party agrees not to quote a price without consulting its competitors) or other terms and conditions

가격 담합이라는 개념은 시장참여자 간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 협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와 최고가 금액에 대한 정보교환 행위, 기만적 입찰 (cover-bid, 일응 현실적인 입찰가격으로 보이지만, 낙찰을 받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써서 내는 행위를 말함), 일부분에 대한 가격 고정, 마진을 담합 (제품가격

내 마진율에 대한 합의), 상호간 가격 협의 (consulting, 경쟁 기업과 협의를 거친 후 거래가격을 부르는 행위) 및 기타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 Market allocation: (시장 분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Dividing up or allocating tenders, projects, territories or customers, for example, by agreeing who should bid or not bid for particular contracts, or rotating who should win particular contracts

입찰, 프로젝트, 국가, 고객 등을 나누거나 분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특정 계약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또는 돌아가면서 특정 프로젝트를 낙찰받도록 하는 협이가 시장 분할에 해당합니다.

(c) Collective boycott (collective refusal to do business): (집단적 거래거절)

A collective boycott occurs when two or more competitors agree not to do business with a particular customer or supplier. It is also illegal for competitors to agree that only one of them will not do business with a particular customer or supplier, or for two or more competitors to threaten or to force one business not to deal with another business, such as a competitor or supplier.

집단적 거래거절 (boycott)은 둘 이상의 시장참여자가 특정 고객 또는 공급사 등과 사업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행위를 한 때 발생합니다. 때때로 한 시장참여자만이 단독적으로 특정 고객 또는 공급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거나, 둘 이상의 시장참여자가 특정업체 (A)를 상대로 다른 업체 (B)와 거래관계를 끊도록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역시 반경쟁적 행위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 Bid rigging: (입찰 담합)

collusive tendering and bid rigging (i.e. colluding with other bidders or potential bidders in relation to bids, including levels of bids, bidding strategy, and even agreements not to submit bids); and

입찰 담합이란 시장참여자 간 특정 프로젝트의 입찰을 두고 실제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들 사이에 입찰 그 자체, 입찰의 각 단계, 입찰 전략, 또는 입찰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모든 형태의 협정을 의미합니다.

(e) Exchange of sensitive information: (민감정보의 교환)

Any exchange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with competitors directly or via an intermediary

사업상 민감한 정보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를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여하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 Coercion: (강제력의 행사)

Conduct which impairs or harms, or threatens to impair or harm, directly or indirectly, any party or the property of the party to influence improperly the actions of a party.

회사가 (스스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사업상) 경쟁력 또는 그 재산을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강제력의 행사),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사업상)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7 Also likely to be illegal are:

또한, 아래의 행위들 역시 반경쟁적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큰 것들입니다.

- (a) Discussing with a competitor our appetite or otherwise for any particular tender or any details of how we are intending to respond to a tender

경쟁 기업에게 회사가 선호하는 프로젝트를 알려주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입찰 전략이나 입찰서에 들어갈 상세한 내용을 어떤 업체와 협의하는 행위

Exchanging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competitor concerning recent, current or intended bids, sales, prices, discounts or terms of business etc.

경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최근/현재/준비 중인 입찰의 정보, 가격, 할인율, 거래 조건 등을 교환하는 행위

- (b) Discussing with a competitor our costs, including the prices we receive from any part of the supply chain (whether or not we use them)

경쟁 기업과 공급망 체인에서 조달 (구매)하는 각종 부품, 자재 등의 가격을 포함한 비용 (Cost) 정보를 협의하는 행위

- (c) Warning and/or agreeing with a competitor or new market entrant to 'stay off our patch'

신규 시장참여자인 경쟁 기업에게 시장 진입에 대한 경고를 하거나, 경쟁 기업과 시장 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 ('stay off our patch', 내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오)

- (d) Abus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 for example, to drive competitors out of the market.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행위)

2.8 The following competition issues are likely to be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아래의 쟁점들이 특별히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nformation exchange and disclosure (정보의 교환 또는 고지 행위)

- Any direct exchange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between actual or potential competitors is likely to infringe the competition rules. Irrespective of whether a meeting is held in a formal or informal setting (e.g. over drinks in a bar), or in the context of a trade association, by telephone, email, text or chat room, you should never exchange or disclose information to competitors relating to:

사업상 민감한 정보 (대외비)를 실질적/잠재적 경쟁 기업들과 직접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법 위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 간 만남이 사업자단체 회의를 통한 것과 같이 공식적인 것과, 전화

· 이메일 ·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과 같이 비공식적인 것을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은 경쟁 기업과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costs of doing business (including salaries or bonuses paid to staff);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적 요소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
-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including charges to clients); 사업상 거래 조건;
- general business/market strategy; 일반적인 사업/시장 전략;
- clients; or 고객 (발주처 등 정보); 또는
- any other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which a competitor would not normally be able to discover through public sources.

그 외 기타 사업상 민감한 정보로서 경쟁 기업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는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

- In certain circumstances, indirect exchanges of information via a third party may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e.g. where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with a view to it being provided to a competitor).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정보 교환 · 제공 행위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3 자를 통해 경쟁 기업에게 회사의 사업상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 The unilateral disclosure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to competitors may also constitute an unlawful concerted practice (i.e. there does not need to be a reciprocal or bilateral exchange), even if the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does not act upon it.

사업상 민감한 정보인 경우에는, 경쟁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It is not necessary for an actual "agreement" to be reached. If an informal understanding which restricts competition is reached, this could be enough to be considered an anti-competitive agreement.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여 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실제" 협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제한성을 의도한 묵시적 합의 (informal understanding)에 이르렀다는 정황만으로도 경쟁법을 위반하는 협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9 The following list of "Dos and Don'ts" should be borne in mind in relation to all contacts with competitors:

경쟁 기업의 담당자들과 의사연락을 주고받을 때, 아래 제시된 리스트의 각 행위에 유념하여 경쟁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 with competitors 경쟁 기업과의 의사연락

- DO** Seek advice about the wisdom of accepting social invitations from competitors and be careful about what you discuss on such occasions.

경쟁 기업의 임직원들로부터 사교적 목적의 행사 초대 등을 받아 이를 승낙한 때에는 행사의 목적과 참여자, 대화의 주제 등의 사안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DO** Remember that all types of arrangement (including informal understandings, gentlemen's agreements and sharing/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by whateve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formal or informal written agreements, oral discussions, telephone calls, email, text and chat rooms, can infringe the competition rules, and may give rise to heavy fines on the participating businesses and criminal convictions for the individuals concerned.

경쟁 기업과의 여하한 협정, 협의, 합의, 조정, 약속 등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경쟁법 위반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한 시장참여자(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 처분은 물론 연루된 임직원에게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DO** Avoid all discussions of competition or competitive subjects with competitors and clearly break off such discussions should they arise. Report any such discussions, even if you have not disclosed any information yourself to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for advice on whether further action may be required.

경쟁 기업의 임직원들과 반경쟁적 합의로 발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논의가 이뤄졌을 경우, 자신은 회사의 정보 등을 타인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와 법무실 준법지원팀에 알려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DO** Object if, at a meeting with competitors, competitive conditions are discussed and, if this does not stop the discussion, leave the meeting and make sure that this is noted, or a minute is taken of your actions.

경쟁 기업 임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반경쟁적 요소를 가진 주제가 나올 경우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십시오.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회의에서 빠져나오되, 자신(현대건설)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는 사실이 회의록 등에 기재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DO** Be very cautious about issuing "signals" i.e. indirectly announcing in advance to your competitors changes to your pricing, bidding or commercial strategy.

경쟁 기업들에게 스스로 반경쟁적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입찰 전 경쟁 기업에게 입찰 전략 또는 가격의 변동을 알려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DON'T** Discuss, recommend or agree with competitors the following matters:

경쟁 기업들과 아래의 사항에 대한 협의, 권유 또는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a) business costs, bid price, successful bidder; 사업 비용, 입찰가, 낙찰자
- (b) fees, discounts, rebates, trade margins etc.; 요율, 할인율, 마진율 등;
- (c)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whether standard or not; 거래조건 등

(d) division or allocation of territories and/or customers; 고객 · 시장 분할 등

(e) any plans to refuse to deal with clients or competitors; or 고객 · 경쟁자 거래거절 등

(g) how to respond to specific bids or opportunities. 특정 사업기회에 대한 대응 등

DON'T Accept any business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or sensitive nature from a competitor that is not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If you do receive such information, you must object and inform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경쟁 기업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여하한 사업정보, 사업상 민감하여 대외비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았을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및 법무실 준법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Contacts with trade associations or industry groups 사업자단체(건설협회 등)와의 연락

2.10 Trade associations and industry groups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mpetitors to meet, and therefore create a risk of inappropriate exchanges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which may constitute a serious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Accordingly, considerable caution must be exercised by the Company's representatives at meetings of trade associations or other industry groups.

사업자단체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단체는 사업상 민감한 정보가 부적절한 형태로 오가기 쉬운 기회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 대리인은 사업자단체나 유사한 조직에서 주선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DO Consider carefully whether it is advisable to attend trade association meetings or other trade meetings at which competitors will be present. If in doubt, seek advice from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특정 시기에는) 사업자단체의 정기회의 등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반 사정이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임직원은 참석 여부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실 준법지원팀과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DO Request and agree to an agenda in advance of attending the meeting to ensure that only legitimate topics will be discussed.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회의 주제와 안건을 먼저 주최측으로부터 확보하고, 해당 회의 또는 모임에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O Examine the rules, constitution and codes of practice of any trade association which you propose to join. If in doubt as to the objectives, seek further advice from external counsel.

새로이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그 가입을 고려할 때, 정관과 규칙 등을 살펴 단체의 구성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이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외부 검토의견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O Object if, at a meeting with competitors, competitive conditions are discussed and, if this does not stop the discussion, leave the meeting and make sure that this is noted, or a minute is taken of your actions. Report any such discussions to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for a decision on whether further action may be required.

경쟁 기업과의 회의가 반경쟁적 요소를 가진 주제를 다루는 경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협회가 멈추지 않는다면 해당 주제에 대한 회사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회의록에 이를 남긴 뒤 회의장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사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법무실 준법지원팀에 알려 필요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ON'T Provide any information to a trade association for dissemination even on an anonymous basis without first checking with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법무실 준법지원팀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여하한 정보를 (익명을 빌려서라도) 사업자단체를 통해 제공 또는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B.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between firms which are not competitors

시장 참여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 간 묵시적 합의 또는 협정의 존재

2.11 The Competition Rules also prohibit certain agreements between companies which are not competitors (e.g. clients, brokers, customers or suppliers) if the agreement has the objective (i.e. purpose) or effect of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the normal competitive process in a market. This includes restricting competition in markets which are upstream or downstream of the markets in which the Company operates. These are known as "vertical issues", because they arise between operators at different levels in the supply chain. Again, these anti-competitive agreements may result from verbal "understandings" as well as from more formal written agreements.

만약 여하한 협정이 그러한 목적 (의도)을 갖고 있거나 시장에서 경쟁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경쟁법은 기업 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경쟁적 협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와 고객, 브로커, 발주처 또는 공급업체 등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산업의 전방·후방 관계에 있는 시장에서 그러한 경쟁제한적인 협정 (vertical issues, 수직적 공동행위)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반경쟁적 행위는 공식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Relations with clients 고객 (발주처)과의 관계

2.12 Agreements between a business and its suppliers, its agents or its clients are generally less problematic than arrangements between competitors but may still raise concerns under the competition rules.

특정 업체와 공급업체, 대리인, 또는 고객과의 협정은 시장 참여자 간의 그것에 비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경쟁법상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13 Caution should still be applied in dealings with clients, especially where sensitive information about competitors are involved. In particular,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competitors should not be requested or accepted from clients, trade associations, or any other groups. You should also not pass information relating to one client's activities to another client.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업상 민감한 정보 (대외비)가 개입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쟁 기업에 대한 사업상 민감한 요소가 포함된 종류의 정보인 경우, 고객은 물론 사업자단체 또는 여하한 모임을 통해서 요구되어서도 안 되고,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은 회사 고객의 (사업상) 활동 정보를 타 고객에게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DON'T Discuss with one client your business dealings with other clients.

고객과 회사 간 거래정보를 다른 고객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DON'T Discuss details of business terms with any client in the presence of other clients or competitors.

경쟁 기업이나 다른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고객과 회사 간 거래조건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DON'T Oblige clients to tell you the prices or bids quoted by or to other companies, or to provide other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regarding competitors.

고객이 회사 임직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 경쟁 기업이 써낸 입찰가 등 경쟁 기업의 사업상 민감한 정보 (대외비)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DON'T Offer any preferential terms to competitors as customers in exchange for an agreement to withdraw from our markets.

회사가 경쟁기업 (고객의 지위도 겸하는 경우)에게 특정 시장에서의 철수를 조건으로 경쟁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Relations with suppliers/vendors 공급망 내 업체들과의 관계

2.14 Competitors can also be suppliers. Be particularly careful when you are negotiating with competitors as suppliers so that you do not restrict competition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upplier.

특정 시장 내 회사의 경쟁 기업 (Competitor)은 또한 어떤 경우에 회사의 공급망 내 업체 (Supplier)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은 회사가 공급망 내 업체에 대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DON'T Disclose any Company specific sensitive information

회사에 민감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DON'T Restrict the terms on which the Company does business, e.g., through any non-compete or exclusivity clauses, without taking legal advice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거래 시 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엄격한 경업금지 의무 또는 배타적 독점거래에 관한 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DON'T Restrict a supplier's freedom to set prices to others

거래상대방이 다른 제 3 자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C. Abuse of a dominant position**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2.15 Companies which are dominant in a market are subject to additional rules. Prohibited practices for dominant companies include: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추가적인 경쟁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한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Exploitative abuses:** These are practices which seek to take advantage of a dominant position (e.g. by charging excessively high prices); and

착취적 남용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 (예: 현저히 높은 가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b) **Exclusionary abuses:** These are practices which seek to use the dominant position to exclude rivals from the market (e.g. by refusing to supply or deal with rivals, reducing prices below cost in order to force rivals out of the market, tying or bundling different products, entering into exclusivity deals etc.).

배제적 남용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예: 경쟁 기업에 대한 공급 또는 거래 거절, 경쟁 기업의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축출 행위, 묶음상품 또는 끼워팔기 등의 행위, 배타적 독점 계약의 체결 등)

2.16 This aspect of competition law is unlikely to apply to the Company's business and is not dealt with in detail in this policy. However, there may be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mpany deals with a dominant company, in which case the competition rules may help to protect the Company against abuse.

경쟁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관한 법의 규정은 회사의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규정 역시 그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특정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 Mind your language - documenting facts**언어에 주의하십시오 - 사실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2.17 Regulators examine records (including those via personal devices) such as email correspondence, text messages, online chats and recorded telephone call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Company's documents and other recorded evidence do not give rise to unnecessary suspicion simply by adopting an inappropriate tone. Inappropriate email messages and chat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have formed some of the most powerful evidence in previous competition investigations.

경쟁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그리고 전화 내역 (개인 소유의 계정을 포함) 등의 증거를 수집 · 분석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기록과 문서에 보고된 내용이 조사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당국의 지난 조사 기록을 고려하면, 경쟁법 위반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 채팅 내역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DO Remember that diaries, telephone calls, online chats, emails and electronic documents on your PC, laptop and the server can also be searched, and their contents can be used as evidence by the authorities. This policy applies equally to such communications as to any other written documents.

업무일지 (diary), 통화 내역, 채팅 내역, 이메일 또는 개인 PC · 노트북 · 서버에 저장된 전자 문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아래 지침은 기타 서면을 통한 의사연락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O Clearly identify the sourc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should not have been the competitor itself) relating to competitors. Don't use phrases such as "reliable sources".

대외비 정보의 경우 그 출처 (경쟁 기업이 그 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십시오. 해당 정보의 출처로 "믿을 만한 정보원에 의하면"과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ON'T Use language implying that the Company is taking action as a result of any "market agreement" or "agreement with competitors".

회사의 시장 내 특정 행위가 "시장의 협정" 또는 "경쟁 기업과의 협정"의 결과라는 점을 암시하는 그 어떤 표현도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DO Keep notes and always write carefully about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raise problems such as:

아래의 활동은 (경쟁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meetings or other communications with competitors or trade associations; 경쟁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모임, 회의 또는 기타 의사연락의 진행

(b) circumstances in which confidential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is obtained; 사업상 대외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민감한 요소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c) any questionable approach or offer by a third party, even if nothing came of it; and 제 3 자의 의문스러운 접근 또는 제안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 in the context of decisions in response to a competitor's actions, make it clear that the Company's decisions are taken unilaterally. 경쟁 기업의 행위에 대한 대응적 맥락에서 이뤄진 회사의 경영 활동 또는 의사결정 (일방적/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함)

DO Keep copies of all such documents.

모든 서면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DO Ensure that legally privileged documents are marked as such and if possible, kept in a separate file - seek advice from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or Compliance Team if in doubt.

법적으로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서면 (Legal Privilege)¹의 경우 그러한 표시가 문서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별도 파일에 따로 보관하십시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법무실 준법지원팀과 해당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DON'T Write documents containing phrases which may imply illegitimate action, such as "for your eyes only", "destroy after reading" or speculate in a document whether particular conduct may be illegal, for example, "This action may infringe the law or may be anti-competitive".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등 위법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 3 자에게 공유하지 말 것” 또는 “확인 후 파기 요망”과 같은 표현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여하한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방안을 추진할 경우 반경쟁적 행위로 해석되어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DON'T Write as if you think it is unethical or improper to compete (for example, "we wouldn't want to steal customers") or that it is virtuous not to compete vigorously.

서면 내 (특정 행위를 통한) 경쟁이 부적절하거나 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 (예를 들면, “우리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를 않습니다.”)하거나, 지나친 경쟁은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O Remember that your best defence to allegations of anti-competitive behaviour is to keep accurate documentation of what happened, prepared when your memory of the events are fresh. Inaccurate or incomplete documentation, on the other hand, can often be detrimental both to your position and to the position of the Company.

반경쟁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제기될 경우, 발생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만이 조사 및 법률 분쟁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최선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기록과 기억은 해당 혐의에 대한 방어는 물론, 회사 내에서 임직원 여러분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y employee who becomes aware of any existing or potential breach of this policy is required to notify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Team promptly. [This is essential as the Company is required to notify the relevant competition authority if it has or may have committed a significant infringement of competition law. The Company may also benefit from reduced fines and individual sanctions if it voluntarily discloses the existence of a competition infringement to the relevant regulator before any competitor does so.]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및 법무실 준법지원팀에 즉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법 위반 사안을 인지한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관할권 있는 경쟁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과징금, 벌금 및 형사처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리니언시 제도의 이용).

If you become aware of any existing or potential breach of this policy or are the subject of, or otherwise involved in, an investigation by the Company or an external body you must not:

¹ 소송 시 증거 개시(Discovery) 제도를 둔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되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증거 개시 제도의 예외로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특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데, 영미법상 legal privilege 라고 표시합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개념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 임직원이 (i) 본 규정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ii) (위반으로 인해)

회사 내부조사 또는 외부기관 (수사기관, 발주처 등)에 의한 조사·수사 대상이 된 경우, 아래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a) deliberately destroy, falsify, alter or conceal evidence material to the investigation;

의도적으로 관련 증거 자료를 파기, 위조·변조 또는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 (b) threaten, harass or intimidate any party to prevent it from disclosing its knowledge of matters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or from pursuing the investigation; or

수사 (또는 회사 내부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여하한 증언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 (c) impede the exercise of any external party's contractual rights of audit or access to information or the rights that any banking, regulatory or examining authority may have in accordance with any law, regulation or treaty or pursuant to any agreement into which has been entered into in order to implement such law, regulation or treaty.

여하한 조사·수사의 방해 행위: (i) 회사가 체결한 계약 기한 외부기관 (발주처, 대주단 또는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계약상 감사권 행사 또는 (회사 내부의) 정보 접근 행위, (ii) 법상 인정되는 금융기관, 규제 및 사정기관의 조사·수사 행위

In enforcing this policy, the Company will take such disciplinary action as it deems appropriate, up to and including dismissal of the individual(s)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

본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반경쟁 행위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최고 징계 해고를 포함합니다.

3.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경쟁법 위반의 결과

- 3.1 If the Company is investigated for a potential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this will result in:

회사가 잠재적인 경쟁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아래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 (a) **Costs of defending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legal costs, investigations cause significant disruption to business and place considerable demands on management time; and

(경쟁당국) 조사 대응 비용: 방어를 위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쟁 당국의 조사로 인해 지장을 받을 회사의 사업 수행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b) **Publicity and scrutiny:** investigations for breaches of the Competition Rules can result in adverse publicity for the Company and closer scrutiny of the Company's activities by regulators in subsequent years.

언론 보도 및 조사: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쟁 당국의 조사 사실이 보도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회사의 영업활동이 경쟁 당국 조사관들의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3.2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Company, and individuals, resulting from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may include the following:

경쟁법 위반 행위가 회사, 임직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Fines:** significant fines may be imposed for the breach of fair trade or similar competition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과징금 또는 벌금: 각국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b) **Criminal sanctions:** criminal penalties may be imposed on individuals who rig bids, fix prices, share customers/markets or limit production/supply;

형사 처벌: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의 반경쟁적 행위는 연루된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법원의 유죄판단 시 징역형 (개인에 한함)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a) **Directions to terminate behaviour:** the relevant competition authorities may impose directions to modify or terminate the agreement or behaviour, and/or to refrain from similar conduct in future;

행정지도 (시정명령, 시정권고): 각국 경쟁당국은 반경쟁 행위자인 특정 시장참여자에 대하여 해당 협정이나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b) **Claims for damages:** certain countries (of which the UK is an example) permit third parties that suffer losses as a consequence of an infringe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to bring proceedings for damages as a result of breach of competition law, as well as being able to obtain interim relief - such as an injunction to stop specified conduct from continuing;

손해배상 조치: 특정 국가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경쟁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반경쟁 행위로 입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구제조치로서 반경쟁적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 (c) **Unenforceable contracts:** any provisions in an agreement which infringe the Competition Rules will be void. The void provisions will be unenforceable, meaning that the Company cannot not take legal action to enforce the relevant provisions;

계약의 불능/무효: 계약의 내용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그러한 내용의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조항은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관련된 조항에 따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d) **Black listing/ EOD:** a significant additional risk of breach of competition law is the black listing of the Company from publicly tendered work and the risk of the Company being prohibited to bid for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financed projects for a period of time. The Company may also be exposed to EOD risk in existing projects.

블랙리스트 등재/채무불이행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경쟁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공발주사업 또는 다자개발은행이 금융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회사의 입찰 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즌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대출 계약 (Loan Agreement) 상 차주 (시공자 포함)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 (대출 회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 **Adverse publicity:** competition investigations can lead to high-profile adverse publicity which would damage both the corporate reputation of the Company, and the professional reputations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and

부정적인 언론 보도: 대기업이 경쟁법 위반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언론 보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f) **Sanctions for failure to co-operate:** various offences can be committed either by the Company itself or by a person such as an employee of an undertaking being investigated, for example in the context of a dawn raid. The possible offences include:

조사 비협조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 회사 또는 연루된 임직원 스스로가 조사 과정에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i) failure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imposed on a person under the regulator's investigative power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always speak to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Team to clarify the extent and legitimacy of the regulators' right to search premises, documents and computers);

조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피조사자의 의무 불이행 (따라서, 경쟁당국의 조사관이 사업장/서면/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법상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i) intentional obstruction of the regulator;

조사관에 대한 내부적인 방해행위

- (iii) destruction, disposal, falsification or concealment of documents; and

(증거) 서면의 파기, 폐기, 은닉 등 행위

- (iv) provid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사건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 (진술 등 내용의 불일치)

The Company may be fined for the above offences and individuals may be fined or imprisoned.]

회사 및 임직원의 그러한 조사 방해 행위는 법 위반죄를 구성하여 별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CONSULTATION AND REPORT

자문 및 위반 신고

- 4.1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is policy or would like further guidance on the Company's competition law measures, please contact [*] the Compliance Team and/or the Competition Compliance Officer via website: [https://elaw.hdec.co.kr/AnonymousBoard/CompBoard_SSO.aspx], email: [kookhoon@hdec.co.kr], or hotline: [02-746-2848]

업무 상 본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법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문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웹사이트

(윤리·준법

상담센터):

[https://elaw.hdec.co.kr/AnonymousBoard/CompBoard_SSO.aspx]

이메일: [kookhoon@hdec.co.kr]

You can also make a report of any violation of applicable competition law via website:

[<http://audit.hdec.kr/auditStart.asp>].

경쟁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웹사이트 (사이버 감사실): [<http://audit.hdec.kr/auditStart.asp>]